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2. 6. 29.(수) 14:35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3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5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3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29차, 제3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 (2022-31-123)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서경방송, (주)아름방송네트워크에 대한 재허가에 [별지]와 같이 조건을 수정·추가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동의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서경방송, (주)아름방송네트워크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올해 1월 27일에 (주)서경방송, (주)아름방송네트워크가 과기정통부에 재허가 접수하였고, 이후 과기정통부 심사를 거쳐 올해 5월 31일 방통위에 재허가 사전동의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는 6월 20일까지 21일까지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자 현황입니다. (주)서경방송은 경남 진주, 사천 일대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이고, (주)아름방송네트워크는 경기 성남을 방송구역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가입자 등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개요입니다. 심사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를 모두 충족하고, 환산점수 또한 모두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법률·회계 분야 총 3인으로 구성된 약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동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는 ‘17년도 재허가 조건 이행여부 및 지역채널 운영·투자 계획,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공적책임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고, 사업계획서 및 과기정통부의 허가조건(안)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등의 실현가능성,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중점 검토하여 의견 및 권고사항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채널 운영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공적책임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이행 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청취 개요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입니다. 총평은 과기정통부에서 요청한 (주)서경방송, (주)아름방송네트워크에 대한 재허가에 동의함입니다. 다만,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 일부를 수정·추가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채널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기정통부 조건(안)에 대한 수정 및 추가 내용입니다. 2개 법인 공통으로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건 수정 내용입니다. 대상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및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개별 SO와의 조건부여 형평성 및 지역적 한계 등을 감안할 때 '시청자위원회'와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겸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조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정된 조문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개 법인 공통으로 경영의 투명성 관련 조건 추가 내용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체결, 주주와의 거래 내역 등 경영의 투명성을 살펴본 결과, 대상 사업자 모두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아름방송네트워크의 특수관계자는 단순 지분구조로 형성된 특수관계자가 아닌 부모와 자녀 등 친족으로 구성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 이행을 담보하고 경영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투명성과 계약 절차의 정당성, 대가산정의 적정성 확보 등) 마련 등을 위한 조건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 조건문은 <표> 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지역콘텐츠 투자확대를 제시하였습니다. 지역채널 투자 계획 등을 살펴본 결과 향후 지역채널 콘텐츠에 대한 투자 계획이 미흡한 실정으로 지역채널에 대한 직접제작비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과기정통부의 조건 수정·추가 및 권고사항 등은 지역중소유선방송사의 경영여건이 이전에 비해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역 방송사로서의 공적책임을 다하고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위원회 의결 후 과기정통부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하겠습니다. 별지로 재허가 사전동의 조건 및 권고사항과 재허가 조건(안), 관련 법령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사항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두 번에 걸쳐 이중으로 허가를 받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 시행되고 나서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고 행정처의 입장에서는 간소화에 힘을 쏟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더욱더 이것을 같이 한꺼번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이러저러한 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사무처에서 고려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서 절차도 개선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들 편의를 위해서 더 개선할 부분들을 찾고 또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김효재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2022-31-124)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윤정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주)국민은행, (주)카카오뱅크, (주)신한은행, (주)하나은행에 대하여 각각 [별지 1 내지 4]의 보완 필요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치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5]의 지정 조건을 부과한다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입니다. (주)국민은행, (주)카카오뱅크, (주)신한은행, (주)하나은행 등 4개 법인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신청법인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경과입니다. '22년 3월 8일, '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계획 공고에 따라 3월에 신청 서류 접수를 받아서 6월까지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항목 및 지정기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및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총 87개 항목을 심사하였습니다. 중요 심사항목(21개) 및 계량평가 항목(2개)에 대해서 '적합' 판정을 받고, 기타

심사항목(64개) 평가점수에 대해서 800점 이상을 획득하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대상이 됩니다. 본인확인기관 심사기준 및 배점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신청법인 4사 모두 평가점수 800점 이상 획득하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아 본인확인기관 지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청법인별 심사결과입니다. 국민은행은 신청법인 중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는 등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설비가 심사기준에 따라 양호하게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저장된 연계정보 삭제 필요 라든지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개선필요 등 8개 사항이 보완 필요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설비가 심사기준에 따라 비교적 양호하게 구성되었고, 다만 허무인에 대한 대체수단 보호대책 개선필요, 또는 암호키 변경 관리정책 개선필요 등 12개 사항이 보완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신한은행 역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설비가 심사기준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다만 불필요하게 저장된 연계정보 삭제 필요, 본인확인시스템 상 일부 불필요한 접근허용 정책 개선 필요 등 15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하나은행은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설비가 심사기준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다만 허무인에 대한 대체수단 보호대책 개선 필요, 또는 시스템 상 개인정보 접속기록 주기적 검토 필요 등 16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신청법인 4사 모두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상 지정기준을 충족하므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다만, 원활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 필요사항'으로 신청법인에 통지하고,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 조치 완료한 법인에 대해 지정서를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본인확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관계법령 준수, 방통위 정기점검 협조 및 보완 필요사항 개선 등도 공통 지정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신청법인에 보완 필요사항을 통지하고, '22년 8월~10월까지 신청법인의 보완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문제는 올해 초 본 위원회가 심사권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따라서 신청기관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턱을 낮춘 만큼 명의도용 같은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심사위원회에서 4개사의 본인확인기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모두 지정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이번

본인확인기관 심사를 적극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본인확인 업무를 위한 보완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한 만큼 각 사별로 90일 이내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사무처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관련해서 국민은행은 '21년 준비 부족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 심사결과 4개 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상에서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서비스 경쟁 유도를 통한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는 제도입니다. 사무처는 본인확인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선정된 본인확인 지정 대상기관에게 부과된 보완 필요사항이 정해진 기간 내에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디지털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금융서비스 분야입니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상 안전한 본인확인에 대한 서비스 수요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결과 4개 법인 모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심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치 여부를 사무처에서 보다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대상 법인들의 철저한 보완 조치를 당부드리며, 지정 후에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확인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방송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주)딜라이브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2-31-125~127)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다> 「방송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주식회사 딜라이브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방송시장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주식회사 딜라이브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1> 의결주문은 ‘주식회사 딜라이브가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관하여 [별지 1]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한다. 주식회사 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 주식회사 딜라이브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에 대해 [별지 2]와 같이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권고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한 주식회사 딜라이브 등에 대해 같은 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안)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조사 배경 및 주요 경과입니다. <가> 조사 배경 및 <나> 주요 경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 피심인 및 조사 대상 기간입니다. 피심인은 주식회사 딜라이브(이하 '피심인①'이라 한다), 주식회사 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 주식회사 딜라이브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등 3개 법인입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4> 기초사실입니다. <가> 피심인 일반현황입니다. 피심인은 「방송법」 제9조에 의해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3개 법인 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운영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는 약 200만대,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자는 약 6만대, 방송사업 매출액은 약 2,870억원입니다. 다음 4쪽 피심인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과 그다음 쪽 피심인 위탁업무 범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5> 피심인 행위사실입니다. <가> 계약 방법 및 해지 위약금 부과 규정 등 피심인은 개별계약과 사업자용 상품계약 2가지 계약방법으로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이용자가 방송서비스 약정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계약 방법에 따라 해지 위약금을 다르게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개별계약은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할인 반환금을 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용 상품계약은 해지 시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지 위약금 산정방법은 '월 평균이용요금 × 계약기간 잔여개월 수'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할인 반환금과 해지 위약금 산정방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나>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 및 해지 절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기준 및 청구 현황입니다. 피심인의 201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은 총 36,279대로 조사되었으며, 모두 '월 평균이용요금 × 계약기간 잔여개월 수'의 위약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피심인의 사업자용 상품 계약 가입자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피심인①이 201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건수는 총 1,487대이며, 청구한 해지 위약금은 총 8,664만 2,0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심인② 강남케이블티브이, 피심인③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의 경우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위약금 청구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피심인①의 조사기간 동안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사유별 현황은 타사전환 11건, 폐업/건물철거 11건 등입니다. 피심인①의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사유별 위약금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목적이 타사전환인 경우, 해지 위약금은 총 11건 1,752만 4,000원이며, 최소 6만원에서 최대 524만 5,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O별 타사전환 해지 위약금 청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참고로 유료방송사업자별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위약금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전체 18개 사업자의 위약금 부과기준은 총 3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KT 등 15개 사업자는 이용기간별 할인금액에 기간별 할인 반환율을 곱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으며, LGU+ 등 2개사는 이용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 전액 반환하도록 했으며, 세 번째 유형인 딜라이브의 경우에만 유일한 경우였는데 이용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6> 위법성 판단입니다. <가> 관련법 규정입니다.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3호는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III. 2. 가호는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위법성 판단입니다. 1) 이용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행위 관련입니다. 피심인이 사업자용 상품계약 이용자에게 적용한 해지 위약금 부과기준은 유료방송시장의 통상적인 중도해지 위약금과 다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피심인의 방식으로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위약금을 3년 약정으로 산정할 경우 해지 위약금은 이용자의 납부금액 대비 최대 3,500%에서 최소 3%까지 청구될 수 있어 업계관행을 벗어난 과도한 위약금을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시 이용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방송시장의 통상적인 사업자용 상품 해지 위약금 부과기준은 이용자가 납부한 금액의 17.6% 이하를 해지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피심인의 해지 위약금은 3,500% 이하로 이용자에게 과도한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방해 행위 관련입니다. 피심인을 제외한 모든 유료방송사업자는 해지 위약금이 이용약관과 동일하거나 이용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피심인①은 사업자용 상품계약 이용자에게 이용하지 않은 잔여개월 수의 전체 이용금액을 위약금으로 과도하게 청구해 이용자가 위약금 부담으로 인해 약정기간 중 해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여 타 사업자로의 전환을 제한하는 등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통해 자사 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여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는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III. 2. 가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 <7> 피심인 주요 의견 및 검토 결과입니다. 과도한 위약금 관련입니다. 피심인①은 위약금 산정 방식이 통상적인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위약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즉 위약금이 ‘과도’한지 여부는 계약 해지 당시, 실제로 청구되는 위약금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청구되지 않은 가정적인 3,500%의 해지 위약금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검토결과, 우리케이بل티브이의 경우 이용자가 이용기간 동안 납입한 총 금액 대비 해지 위약금 비율이 169.5%로 과도한 해지 위약금을 실제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타사전환을 고려하는 다른 이용자의 경우도 과도한 위약금 산정 조항을 적용받고 있어 피심인①의 의견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음 제재 처분 관련해서 사업자용 상품 위약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위법상태가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동일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정명령 부과 필요성 및 실익에 대해 재고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검토결과, 피심인①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피심인①의 의견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피심인②, 피심인③ 관련 “위약금 청구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검토결과, 위약금 청구행위가 없어 금지행위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의견은 수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8>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안)입니다. <가> 시정조치 내용은 1)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1개월 이내), 2) 업무처리 절차 개선(3개월 이내), 3)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1개월 이내), 4) 시정조치 이행결과 보고(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를 명하는 안입니다. <나> 과징금 부과입니다. 부과근거는 「방송법」 제8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별표5] 및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Ⅲ. 2. 가호를 위반한 피심인①의 행위에 관하여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관련매출액은 전체 기본채널수신료 매출액 중에서 사업자용 상품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며, 위반일 당시 '과징금의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5]의 'Ⅲ.1.나. 1)기준금액 산정'에 따라 이를 연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위반행위 관련 3년간 평균매출액은 26억 1,900만원입니다. 부과기준을입니다. 방송법령과 고시에 따라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서 기준금액을 산정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피심인①이 조사기간 중 위약금 부과청구 건수가 11건(약 1,750만원)인 점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부과기준율을 0.6%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필수적 조정입니다. 피심인①의 위반행위 기간은 9개 SO 중 우리케이بل티브이 1개 SO가 중기위반으로 해당사업자는 기준금액에서 30%를 가중하고, 나머지 8개 SO는 기준금액을 유지하도록 하며, 위반행위 종료일인 2021년 7월 27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위반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 횟수에 의한 조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추가적 조정은 「방송법 시행령」 제70조 [별표5]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50% 이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추가적 가중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피심인①이 조사 착수 후 자진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20% 추가적 감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종 과징금은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금액에 필수적·추가적 조정을 거친 결과,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다> 개선 권고 관련입니다. 피심인② 강남케이بل티브이와 피심인③ 경기동부케이بل티브이는 사업자용 상품계약 이용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 상 위약금 조항 등을 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9>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7월 중으로 시정조치 통보를 하겠습니다. <별지>로 피심인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안)를 첨부하였고, <붙임>으로 대한 피심인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이 민원이 제기되어서 조사가 착수된 것입니까?

○ **김우석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조사결과 주식회사 딜라이브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이 시장의 공정경쟁을 방해할 만큼

과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약금이란 통상적으로 가입기간 동안 받은 혜택을 반환하
되 가입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은 늘
어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위약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딜라이브의
건의 경우 위약금이 계약기간 잔여개월 수 사용분이다 보니까 위약금이 상당히 과도한 것
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중간계약 해지를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 전환을
막고 궁극적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할 정도입니다.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할 필
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부과건수가 많지 않고 시장경쟁에 미치는 정도가 약하다는 점
에서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판단한 사무처 원안에 동의하고, 더불어 과징금의 필수적·
추가적 가중의 경우 위법행위기간, 자진시정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 같습
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주식회사 딜라이브가 일반적이지 않은 위약금 부과기준을 적용해서 사업자용 상품계약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고, 그 결과 타 유료방송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해서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한 사안입니다. 다행히 주식회사 딜라이브가 사업자용 상품계약서의 이러한 문
제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원래 3월부터 변경하였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한 만큼 과징금을 비롯
한 시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피심인은 충실한 시정조치 이행을 통해서 다시는 부적절한
해지 방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가>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입니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시 (사)한국ABC협회의 자료만을 고려하여 기술되어 있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다른 기관의 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19년 7월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 공고를 한 바 있으며, '21년 9월에는 문체부가 (사)한국ABC협회 자료 활용중단 요청 공문을 방통위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서면보고를 거쳤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조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신문부수 인증기관”에서 “구독률 산정 기관”으로 변경하여 (사)한국ABC협회 외 다른 기관도 구독률 산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또한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 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다른 통계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장래가추계통계 외 인구총조사 중 통계작성기관의 다른 총가구 수 통계와 문체부가 조사한 구독률 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조문을 일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위원회 보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8월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위원회 의결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시행령 개정예에 따른 관련고시도 개정하여 구독률 산정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우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에 (사)한국ABC협회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내렸지요?

○ 강필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지금 (사)한국ABC협회의 시정명령 이행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합니까?

○ 강필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아직 시정명령 이행점검을 나선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문체부에 연락해 봤습니까?

○ 강필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문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강필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문체부의 입장은 앞으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언제까지 하겠다고 합니까?

○ 강필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언제까지 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작년에 문체부가 “신문발행 부수 인증기관을 믿지 못하겠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단다”라는 이런 문제제기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는 시청점유율 문제까지 여파를 미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사)한국ABC협회의 자료가 아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예산을 들여서 표본여론조사로 해서 시청점유율 조사를 하겠다고 방침을 만들고, 그에 따라 올해 우리는 시청점유율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한국ABC협회 자료는 정부가 신뢰할 수 없다고 하니까 다른 기관에서 그 자료를 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조문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지요?

○ 강필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런데 어떤 조사도 전수조사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전수조사를 투명하게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옳지, 그것을 샘플링조사를 하면 어떤 샘플링조사도 전수조사보다 더 정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사)한국ABC협회 자료를 정부가 사용하는 것은 지역신문 또는 군소신문들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독률 조사를 하면 이번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군소신문은 열독률 조사가 0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샘플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군소신문이나 지역신문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 자체의 기초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문체부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양 부처 간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문체부가 강행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방통위 입장에서는 이 시행령을 바꾸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점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합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도 작년의 입장에서 조금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쓸 자료가 없으니 원안에는 동의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무처가 깊이 인식하고 문체부와 업무협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문체부가 2021년 7월에 (사)한국ABC협회 자료의 신뢰성 문제와 권고사항 미이행으로 정책적 활용 중단을 발표했고, 2021년 12월 (사)한국ABC협회의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이 만료되었으나 인증기관으로 추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문체부는 2022년 1월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한국ABC협회의 조사결과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시청점유율 산정은 첫째, 정부 자료의 신뢰도, 둘째 부처 간 통일된 정책 방향, 셋째 제도적 공백 방지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에 (사)한국ABC협회의 자료만을 고려하여 기술되어 있는 시청점유율 관련 조문을 공인된 다른 기관의 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특정 협회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청점유율 제도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사)한국ABC협회의 자료와 관련해 여러 주장,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방송 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 보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 안건 역시 사무처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모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3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12분 폐회 】